

<보도자료>

서울학생인권조례는 민주의 미래다!

- 민주시민의 뜻,

서울학생인권조례의 후퇴없는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때: 2011년 12월 19일(월) 오전 8시

곳: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인권단체연석회의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 기자회견 식순 ■

사회 : 전누리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1.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경과와 주민발의안의 주요 내용

- 배경내(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공동집행위원장)

2. 서울학생인권조례 원안 통과 촉구 발언

- 해원(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 김옥성(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 해인(공익변호사그룹 공감)
- 강호원(민주노총서울본부)
- 이병우(전교조서울지부)

3. 퍼포먼스 - 청소년대표단의 교육위원회 선물 전달식

4. 기자회견문 낭독

[자료 1]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의 의의와 경과

■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과 조례 제정의 의의

- 경기도에서는 지난해 김상곤 교육감의 핵심 정책으로 조례가 제정되어 올해 전면 시행. 광주에서는 올 10월 조례가 도의회를 통과, 11월 선포되었음. 오늘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 전국에서 3번째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는 것인 동시에, 대한민국의 심장부에서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학생인권조례 전국화의 물꼬를 튼다고 볼 수 있음.
- 경기도와 광주에서는 교육청 발의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반면, 서울에서는 시민 10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발의로 학생인권조례안이 의회에 상정되었음. 주민발의 성사는 학생인권에 대한 시민 의식의 성숙과 지지를 확인했다는 의미를 가짐.
- 서울에서는 급식지원조례, 시청광장 조례에 이어 3번째로 주민발의가 성사된 것이 바로 학생인권조례임. 소수자 인권에 관한 조례가 시민 입법의 형태로 성사된 것은 각별한 의미를 가짐.

■ 서울학생인권조례 의회 심의를 앞둔 조례본부의 입장

- 보수단체들의 얼토당토않은 억지 주장에 휘둘려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무산되거나 보류될 경우, 이미 조례가 제정된 경기도와 광주 조례의 폐기 운동으로까지 확산될 우려가 있음.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타 지역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음.
- 이번 회기에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이 훼손 없이 통과시켜야 할 막중한 책임이 시의원들에게 부여되어 있음. 만약 주민발의안 통과가 무산되거나 경기도·광주 조례보다 후퇴한 안이 통과될 경우, 그 모든 책임은 의회 다수석을 점한 민주당에 돌아갈 수밖에 없음.

■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에 이르기까지

- ▷ 80년대 말 교육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학생인권 보장에 대한 요구가 움트기 시작.
- ▷ 1989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유엔총회에서 채택. 1991년 대한민국 정부 가입. 1996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대한민국정부에 대해 1차 협약 이행 권고 발표.
- ▷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이후, 교육부 차원에서 ‘학생인권선언문’ 작성이 시도. 당시 교실붕괴 담론이 기하급수적으로 터져 나오면서 시기상조를 이유로 학생인권선언문 작성이 중단.
- ▷ 2000년 이른바 ‘노컷운동’이 폭발적으로 전개. 온·오프라인 청소년모임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연대체를 중심으로 두발자유 서명운동이 전개. 청소년/비청소년들의 폭발적 호응을 얻으면서 짧은 기간

16만여 명의 서명이 모임.

- ▷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후 학생인권 관련 진정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시작.
- ▷ **2003년 1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1차 권고에 이어 2차 권고 발표.** 1,2차 권고에서 지적한 주요 내용은 △체벌이 공식적으로 허용된다 △학교에서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자의적인 기본권 제한이 많다 △학생회에 대한 행정적 통제와 학교 밖 정치활동 참여를 금지하는 교칙을 통해 학생의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다 △교사 등 아동관련 전문가에 대한 인권교육이 부족하다 △교육의 경쟁적인 풍토가 아동의 잠재된 능력을 개발하고 자유로운 사회에서 책임있는 생활을 영위할 준비를 하는 과정을 가로막을 위험이 있다는 것이었음. 당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는 여러 언론을 통해 사회에 전해지면서 유관단체와 교육계, 시민들의 인식에 커다란 전환 계기를 마련.
- ▷ 2004년 서울 대광고 강의석 학생의 목숨을 건 단식투쟁 끝에 ‘미션스쿨 내 종교 자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확산되고 교과부 지침이 보완되기 시작.
- ▷ **2005년 ‘두발자유와 인권을 위한 청소년 행동의 날’이 개최되는 등 학생인권 보장에 대한 요구가 다시 한 번 들끓기 시작.** 학내 종교 자유, 선거권 인하, 정보인권 보장, 청소년노동인권 보장 등 청소년 인권 운동의 의제 역시 확산되기 시작.
- ▷ **2006년 17대 국회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일명 학생인권법안,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대표 발의)이 제출되면서** 법률 차원에서 학생인권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각계의 운동이 전개. 각계 단체들이 모인 <아이들 살리기 운동본부>의 법 제정 운동, 청소년인권활동가들의 전국행진 등을 통해 학생인권법 제정을 대대적으로 요구. 2007년 말 초중등교육법에 학생인권 보장 의무를 부여한 조항이 신설되지만, 선언적 내용에 그쳐 실효성을 의심받음.

*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 ▷ **2008년 이른바 ‘학교자율화 조치’**라는 이름으로 학생인권 관련 교과부 지침이 모두 폐지되고, 교육청 차원의 자율 지침으로 변경.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법 개정은 물론, 교육자치입법을 통해 학생인권 기준과 제도를 만들어내야 할 새로운 여건 조성
- ▷ **2010년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 2009년 7월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지방자치법 차원에서 초중등교육법이 담아내지 못한 구체적인 학생인권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권리회복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 움직임이 가시화. 2010년 9월 17일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 이후 학생인권조례가 인권과 민주주의가 꽃피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주요 관심사로 등장하기 시작.
- ▷ 2010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공약으로 내건 진보교육감들 당선. 서울, 광주, 전북 등 교육청 산하에 학생인권조례제정위원회 구성
- ▷ **2011년 8월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운동 최종 성사.**
- ▷ 2011년 10월 광주학생인권조례 제정
- ▷ 2011년 11월 경남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성사

■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운동 주요 경과

- ▷ 2010년 5월, 교육감 후보들과 '학생인권조례 및 학생인권 정책협약식' 개최
- ▷ 2010년 7월 7일,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출범
- ▷ 2010년 7월 17일, 서울시교육청 오장풍 교사 체벌 사건을 계기로 체벌 전면 금지 계획 발표
- ▷ 2010년 9월 17일, 경기도학생인권조례 도의회 통과. 전국 최초 학생인권조례 제정
- ▷ 2010년 9월 27일, '학생인권유린 비호 법안' 학교장 절대권력 강화 법안' 학생인권조례 무력화 법안' 교육과학기술부의 초중등교육법 개악 시도 규탄 기자회견 개최. 교과부의 체벌 합법화, 학교규정을 통한 학생인권 제한 등 학생인권조례와 상충되는 상위법 개정 시도 움직임.
- ▷ 2010년 9월말 :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100인위원회 구성
- ▷ 2010년 10월 5일 : 경기도학생인권조례 공포 이후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지침'을 전달하고 조례를 반영해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토록 권고.
- ▷ 2010년 10월 6일 : 서울학생인권조례 시민제안마당 개최
- ▷ 2010년 10월 18일, 참교육연구소와 공동으로 '학생인권에 관한 학생, 교사, 학부모 의식 조사' 결과 발표. 수도권 지역 학생 1885명, 교사 1478명, 학부모 959명 대상 조사. 학생인권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해 학생 88.6%, 교사들 88.7%, 학부모는 87.6%가 필요하다고 답해.
- ▷ 2010년 10월 18일,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공청회 개최. 이후 주민발의안 확정
- ▷ 2010년 10월 27일,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운동 시작
- ▷ 2010년 11월 2일, 81돌 학생의날 맞이 '학생인권조례시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대토론회 개최
- ▷ 2010년 11월~12월 : 11월 1일 서울시교육청의 체벌 전면금지 실시 이후, 몇몇 언론들의 '위험한 학생론', '학생 vs 교사 대립' 보도 급증. 서명운동 주춤.
- ▷ 2011년 1월 17일, 교과부 '학교문화선진화방안' 발표. 1월말 학교장의 학생 권리 자의적 제한, 간접체벌 허용 등 반인권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안 입법 예고
- ▷ 2011년 1월 23일, 경기도교육청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내 120여개교가 학생인권조례 취지와 상반되는 학교생활규정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교과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안 추진에 힘입어 학생인권조례에 버티기로 일관.
- ▷ 2011년 1월 26일, <교과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에 관한 국회 토론회> 개최(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공동 주최). 이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 2011년 2월 8일, 영하의 추위를 뚫고 매일 주민발의 서명전 돌입. 주말 집중서명전, 행사장 서명도 이어져
- ▷ 2011년 2월 15일, <교과부 인권침해 정책, 청소년 긴급 성토크대회> 개최
- ▷ 2011년 2월 16일, <학생인권조례의 시대, 교사가 말하다> 집담회 개최. '학생인권 vs. 교사 대립 구도의 허구성을 초중고 교사들이 직접 나서 질타
- ▷ 2011년 3월 3일, 국가인권위원회 '간접체벌도 인권침해' 결정. 간접체벌을 허용한 교과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안에 대한 의견 발표.
- ▷ 2011년 3월 6일·7일, <경향신문> '아직도 먼 학생인권' 기획 보도. 서울본부 기획 참여.

- ▷ 2011년 3월 8일 : 서울 중암중 체벌사건 규탄 기자간담회 개최
- ▷ 2011년 3월 14일 : 교과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안 국무회의 통과. 애초 학교장에게 학생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던 조항이 입법예고안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으로 삭제. 그러나 간접체벌 허용의 불씨 남겨.
- ▷ 2011년 3월 14일~31일, <학생인권 시민 연속특강> 5회 연속 개최(경향신문·오마이뉴스·한겨레 공동 후원). 광노현 서울시교육감, 이범희 용인 흥덕고(혁신학교) 교장, 정혜신 정신과 전문의, 허종강 한울노동문제연구소 소장, 백창우 시인/작곡가 초청 강연. 매회 시민 1백~3백여 명 참여로 학생인권 관련 높은 공감대 형성
- ▷ 2011년 4월 7일, <학생인권설문조사(언어폭력, 차별) 결과 및 학생인권 침해 제보 사례> 발표. 서울지역 중고등학생 5명 중 1명 꼴로 1주일에 1~2회 교사에 의한 언어폭력(욕설, 인격 비하 등)을 경험. 16.6%가 차별을 자주 경험한다고 답하고, 25.7%는 가끔 차별을 당한다고 답해.
- ▷ 2011년 4월 11일, <4월 학생인권의 찬란한 봄을 꽃피우자> 대시민 호소 기자회견 개최.
- ▷ 2011년 4월 19일, <민주주의와 인권의 역사, 학생인권으로 이어가자> 청계광장에서 국립 4.19묘지까지 주민발의 동참을 호소하는 도보행진 진행.
- ▷ 2011년 5월 10일,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시한 마감(애초 4월 26일 마감이었으나 서울 중구, 강남구 재보궐 선거로 인해 14일 연장). 주민발의 성사 기준인 8만 1885명을 뛰어넘는 **8만5281명의 서명 취합.**
- ▷ 2011년 5월 11일~19일, 서명지(청구인 명부) 동별 분류 작업
- ▷ 2011년 5월 20일 10시 30분, <서울시민의 힘으로 학생인권의 찬란한 봄을 꽃피웠습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제정 청구인 명부 제출 및 대 시민 보고 기자회견 개최
- ▷ 2011년 6월 22일~26일 주민발의 보정(추가 서명) : 유효 서명지가 7만1천여 장 안팎으로 확인되면서 닷새 간 추가 서명과 정보가 누락된 서명지에 대한 보정 작업 진행. 1만5천여 장을 목표로 추가 서명을 받았으나 3만장이 넘게 서명지가 모임.
- ▷ 2011년 6월 27일~7월 4일, 서명지(청구인 명부) 동별 분류 작업
- ▷ 2011년 7월 5일, 서울학생인권조례 추가 청구인명부 3만여 장 제출
- ▷ 2011년 8월 4일, 법제심의 거쳐 서울학생인권조례 청구 수리. 유효 서명인 수 총 97,702명으로 확정
- ▷ 2011년 9월 7일, 광노현 교육감 후보 매수 혐의로 구속
- ▷ 2011년 9월 8일, 교육감이 구속된 상황에서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초안 발표 공청회 개최. 주민발의안에 비해 상당수 후퇴된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조례본부 이름으로 강력한 수정 요구
- ▷ 2011년 9월 8일, 설동근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 직무대행을 맡게 될 임승빈 부교육감에게 ‘학생인권조례 추진 재검토 필요하다’며 외압 행사
- ▷ 2011년 9월 13일,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은 흔들림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성명서 발표.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부당한 외압과 불필요한 반대 중단 촉구.
- ▷ 2011년 9월 16일,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서울시교육청 초안의 문제점과 보완 사항 등을 정리한 의견서를 교육청에 전달. 인권의 원칙에 근거한 조례안 마련, 조례의 조속한 제정과 현장 안착을 위한 교육청 책무 확인.

- ▷ 2011년 9월 20일, 서울 도봉구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청소 상태가 불량하다며 학생들 여러 명의 얼굴에 대결레를 문지르는 '대결레 체벌' 사건 발생. 이튿날 교육청이 진상조사에 나서고 해당 교사의 사과가 있었지만, '훈육 차원에서 했던 일'이라며 문제를 축소.
- ▷ 2011년 9월 21일, 광노현 서울시교육감 구속기소. 교육감 직무정지.
- ▷ 2011년 9월 28일, 임승빈 교육감 권한대행,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한 업무보고 자리에서 "사회적 파장과 찬반 논란이 심한 일부 의제에 대하여는 공청회, 토론회, 설문조사 등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과 시의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발언.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지속 추진과 지연, 무산까지 다양한 해석 나와.
- ▷ 2011년 9월 28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 보수성향 단체 11곳, 무상급식·학생인권조례·체벌금지 정책 등을 방조해 온 임승빈 권한대행체제를 신뢰할 수 없다며 교과부에 경질 촉구.
- ▷ 2011년 9월 30일,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서울시의회로 송부. 서울시교육청의 조례안 입법 예고는 언제 이루어질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
- ▷ 2011년 10월 5일, 경기도학생인권조례 1주년,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의회 제출에 즈음한 각계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개최. 교육청 발의 여부와 상관없이 주민발의안을 중심으로 서울학생인권조례를 시급히 제정할 것을 촉구.
- ▷ 2011년 10월 5일, 광주학생인권조례 도의회 통과
- ▷ 2011년 10월 6일,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한국정부 3.4차 보고서(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5년마다 한번씩 이행보고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에 대해 최종 권고 발표. 체벌 금지, 청소년 비혼모·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 조치 마련, 학생의 의견 존중, 종교 자유 보장, 정치활동에 대한 아동의 능동적 참여 보장 등을 권고.
- ▷ 2011년 10월말, 서울시교육청 생활지도정책자문위원회 학생인권조례안 최종안 확정. 그러나 교과부에 의해 새로 임명된 이대영 부교육감은 교육청 조례안은 의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
- ▷ 2011년 11월 17일, 광주학생인권조례 제정, 선포
- ▷ 2011년 11월 22일,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후퇴 없는 통과를 촉구하는 의견서' 전달
- ▷ 2011년 11월 25일, 경남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운동 성사
- ▷ 2011년 12월 13일, 교총 등 보수단체 중심으로 '학생인권조례 저지 범국민연대' 결성. 서울학생인권조례 부결 촉구
- ▷ 2011년 12월 14일,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 주민발의안 원안 통과 촉구 서울시의회 농성 돌입. 각계 농성 지지와 주민발의안 원안 통과 촉구 성명 발표.
- ▷ 2011년 12월 16일,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학생인권조례성소수자공동행동 등 주민발의안 원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개최. 서울시의회 교육상임위원회, 주민발의안 심의하다 결정 연기
- ▷ 2011년 12월 19일, 서울시의회 교육상임위원회 재개. 오후 2시 본회의 예정

[자료 2]

학생인권조례 쟁점 조항 비교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
<p>제4조(책무) ①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고 정책을 수립할 때 학생의 인권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제5조(교육환경의 개선) ①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경쟁 교육을 지양하여 학생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②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의 교육활동에 적합한 교육시설과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제4조(책무) ①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때 학생의 인권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 학교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④ 교육감과 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는 학생의 교육활동에 적합한 교육시설과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제3조(책무)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교육과정 및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p> <p>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정책에 협력하고 학생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③ 학생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규범을 준수하고 생명과 인간의 존엄을 중시하며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p> <p>④ 보호자는 인권 교육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학생이 올바른 인권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교와 협력하여야 한다.</p>
<p>제6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p>	<p>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p>	<p>제20조(차별 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p>

<p>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p> <p>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p>	<p>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p> <p>② 학교는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p>	<p>성별, 종교, 민족, 언어,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 경제적 여건,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p> <p>② 학교는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제7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p> <p>② 학생은 특정 집단이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에 기초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설하는 행위나 모욕,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p> <p>③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을 방지하여야 한다.</p>	<p>제6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p> <p>②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된다.</p> <p>③ 학교와 교육감은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학교폭력 및 체벌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p>	<p>제11조(신체의 자유) ① 학생은 존엄한 인격체로서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p> <p>② 학교에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등을 포함한 체벌은 금지된다.</p> <p>③ 학교에서는 교육적 목적의 활동을 제외한 강제노동은 금지된다.</p> <p>제19조(건강과 안전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환경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p> <p>③ 학생은 폭행,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에서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p>
<p>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두발, 복장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p>	<p>제11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p>	<p>제14조(표현의 자유) ② 학생은 두발, 복장 등 자신의 용모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교복은 제15조제3</p>

<p>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제1항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p>	<p>② 학교는 두발의 길이를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정당한 사유와 제18조의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는 학교의 규정으로써 제1항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p>	<p>항의 절차에 따라 학교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p>
<p>제15조(양심·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세계관, 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생에게 예배법회 등 종교적 행사에 참여하거나 기도참선 등 종교적 행위를 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2. 학생에게 특정 종교과목의 수강을 강요하는 행위 3. 종교과목의 대체과목에 대하여 과제물의 부과나 시험을 실시하여 대체과목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 4. 특정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아니한다는 등의 종교적인 이유로 학생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등의 차별행위 5. 학생의 종교 선전을 제한하는 행위 6. 특정 종교를 비방하거나 선전하여 학생에게 종교적 편견을 일으키는 행위 7. 정당한 사유 없이 교내 행사를 외부 종교시설에 	<p>제15조(양심·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세계관·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학생에게 특정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13조(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과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특정 종교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p>

<p>서 개최하는 행위</p> <p>8. 종교와 무관한 과목 시간 중 특정 종교를 반복적, 장시간 언급하는 행위</p> <p>④ 학교의 장은 교직원이 전2항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다.</p> <p>⑤ 학교의 장은 특정 종교과목의 수업을 원하지 아니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이를 대체할 과목을 마련해야 한다.</p>		
<p>제16조(의사 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p> <p>②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p> <p>③ 학생은 학교 안팎에서 집회를 열거나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p> <p>④ 학생은 학교 안팎에서 모임이나 단체활동 및 정치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p> <p>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⑥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교지 제작,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 등 학생의 언론활동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시설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p>	<p>제16조(의사 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p> <p>② 학교는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학교는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14조(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p> <p>(② 두발, 복장 관련 조항)</p> <p>③ 학생은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p> <p>④ 학교는 인터넷 및 인쇄 매체를 통한 학생들의 언론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9조(학습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학습에 관한 권</p>	<p>제8조(학습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법</p>	<p>제10조(학습할 권리) ① 학생은 법령과</p>

<p>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p> <p>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치지 않은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학생에게 교내·외 행사 참석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특성화 고등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여야 한다.</p> <p>④ 교육감, 학교의 장 및 용교직원은 장애 학생(일시적 장애를 포함함, 이하 같음),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등의 학습권을 보장하여야 한다.</p> <p>⑤ 취학연령의 이주아동(18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국내에서 90일 이상 거주한 자를 말한다)은 교육기본법 제8조와 초·중등교육법 제12조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p> <p>제10조(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① 학생은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p> <p>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p> <p>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방과후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함에 있어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을</p>	<p>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 없이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p> <p>② 학교는 교육과정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학생에게 임의적인 교내외 행사 참석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전문계 고등학교는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④ 학교와 교육감은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p> <p>제9조(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① 학생은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p> <p>② 학교는 학생에게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학교는 방과후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으로써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습할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p> <p>② 학생은 정규적인 교육과정 이외의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보충수업, 자율학습 등 강제적인 교육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p> <p>③ 학교는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규교과 이외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운영함으로써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p> <p>④ 학교는 교육과정을 준수하고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임의적인 교내·외 행사 참석을 학생에게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p> <p>⑤ 교육감은 임의적인 교내·외 행사 참석을 학교에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p>
--	--	--

<p>보장해야 한다.</p>		
<p>제11조(휴식을 취할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교육감은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충분한 휴게 시간과 휴게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p>	<p>제10조(휴식을 취할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p>	<p>제18조(휴식과 문화 활동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개성 있는 자아의 발달을 위한 적절한 휴식과 놀이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건강한 문화를 형성하고 누리기 위하여 공간 및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학교는 학생의 다양한 문화 활동을 위하여 교육, 공연, 전시, 축제 등의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3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p>

의견서

- 발 신 :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 수 신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님
- 일 시 : 2011년 11월 22일(화)
- 제 목 : 서울학생인권조례의 후퇴 없는 제정을 위한 의견서
- 문 의 : 배경내(017-214-3550), hrs3388@gmail.com

[서울학생인권조례의 후퇴없는 제정을 위한 의견서] 서울학생인권조례, 이렇게 제정되어야 합니다

올해 유난히도 굴곡이달 많았던 서울교육이 거센 풍랑 속에서도 거침없이 전진할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어준 서울시의회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한해를 마감하는 이때, 우리는 아직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이라는 항해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항해에 쏟아진 우려와 편하를 충분히 덮고도 남은 만큼, ‘새로운 교육’,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에 대한 서울시민의 기대와 열정은 이미 확인된 바 있습니다. 경기도에 이어 올해 광주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선포되었습니다. 이제는 서울의 차례입니다. 세계 어디에 내어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조례를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몇 가지 의견을 전하고자 합니다.

서울시민의 열망으로 빚어낸 주민발의안을 지켜주십시오



한땀 한땀 소중히 모은 주민발의 서명지를 교육청에 전달하는 모습

■ 기억하십니까? 모두가 불발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던 주민발의운동이 10만에 이르는 서울시민의 지지 서명으로 기적처럼 성사되었습니다. 급식조례, 서울시청광장조례에 이어 3번째로 서울에서 주민발의가 성사된 조례안이 바로 학생인권조례입니다. 이번 회기에서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다면, 전국 최초로 주민발의로 시작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는 역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은 경기도학생인권조례, 국제인권기준, 국내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함과 동시에, 낡디 낡은 학생인권의 현실과 새로운 교육을 열망하는 교육주체들의 뜻을 오롯이 반영하여 만들어졌습니다.

■ **새로 만들어진 법은 과거의 법보다는 좀더 나은 것이어야 합니다.** “경기도보다 더 진전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겠다.”는 것은 광노현 교육감도 일관되게 공약해온 사항이기도 합니다.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법이 지역마다 들쭉날쭉 편차가 심해서도 안 됩니다. 악의적 왜곡이나 부풀려진 오해로 인해 조례의 취지가 훼손되고 기준이 후퇴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울시의회가 원칙을 바로 세워 주십시오.

최근 논란이 된 몇몇 조항에 대한 비판은 근거가 빈약합니다

유엔 교육권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유엔아동권리협약, 유네스코 권고 등 국제사회는 일관되게 “**학교는 학생의 다양성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학생들이 부당한 차별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포용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도 필수적입니다. 유엔 기준들은 또한 “**교실과 학교는 학생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것을 격려하고 허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통해 민주적 시민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책임 있는 삶을 영위하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현재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싸고 빚어지는 논란은 해당 조항 자체에 대한 현실적이고 근거 있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학생인권조례 제정 자체를 반대하기 위해 부러 선택한 악의적 왜곡에서 비롯된 측면이 큼니다. 김형태 교육위원은 현재의 논란에 대해 “**병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지었는데 마치 병원이 생겨서 환자가 생긴다고 말하는 꼴**”이라며 일갈한 바 있습니다.

1. 성적 지향,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금지 반드시 명시되어야

■ **40명 학급당 적어도 2~4명 정도의 성소수자 학생이 존재하고 있음이** 국내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절반 이상이 모욕과 구타, 차별을 겪고 있으며 그 결과 다수의 학생들이 자살 위험에 내몰리거나 학교를 떠나고 있습니다.

■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4>은 성소수자 청소년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6일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명시적으로 입법화되지 않은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소수자 아동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교육적 조치를 포함한 각종 조치를 취할 것을** 대한민국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CRC/C/KOR/CO/3-4, 28~29항).

■ “**성소수자 학생에게 안전한 학교 만들기**”는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 이미 보편화

된 정책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등 13개 주와 워싱턴DC는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차별 금지를 명문화하고 학교의 의무와 구제수단 등을 담은 교육 관련법을 제정하였고, 영국의 평등법에서도 성소수자 학생에게 포용적 학교환경을 조성할 교육당국의 의무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5>는 ‘비차별의 원칙은 권리의 인정과 실현을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아동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찾아낼 것을 요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10년 12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또한 “양심을 가진 인간으로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차별을, 특별히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거부합니다. 우리가 편견에 맞설 때에야 비로소 폭력은 멈출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차별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고 적극적으로 맞설 때 사라질 수 있습니다.** 차별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성소수자 학생의 존재를 지우거나 차별을 묵인하는 것 자체가 더 큰 차별을 부르는 자양분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 주민발의안에 담긴 차별금지 조항은 이미 제정되어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 금지 조항을 모범으로 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성적 지향은 **경기도학생인권조례, 광주학생인권보장및증진에관한조례, 서울시교육청 자문위안,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안**에도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민발의안은 여기에 ‘성별정체성’을 추가하여 트랜스젠더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보강하였습니다.

2. ‘임신·출산에 따른 차별 금지’는 교과부도 수용한 정책 방향

■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학생 미혼모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0대 미혼모 가운데 84.9%가 학업을 중단했고, 절반 이상(54.5%)이 학교로부터 자퇴나 휴학 등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 미혼모 중 60% 가까이는 학업을 계속하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2006)에 따르면, 전체 미혼모 가운데 1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1980년대 24.9%에서 2000년대에 이르러 53.5%에 이를 만큼 증가 추세에 있기도 합니다.

■ 임신·출산에 따른 차별 금지는 비혼 상태로 부모가 된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청소년 시기의 임신과 학업 중단은 장기적으로 실업과 빈곤으로, 그리고 다시 자녀의 빈곤과 사회적 방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0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 미혼모(아직 출산하지 않고 임신상태에 있는 경우까지 포함)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교과부**에서는 아이를 키우면서도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대안학교를 전국 시·도교육청별로 최소 1곳 이상 마련하기로 하고, 일선학교에 임신을 이유로 학생을 징계하는 일이 없도록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에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를 명시하는 것은 이러한 정책 방향을 조례로 안정화하는 것입니다.**

- 지난 10월 6일 발표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최종견해에서도 청소년 비혼모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야 할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CRC/C/KOR/CO/3-4, 28~29항). 미국, 영국 등 외국에서는 임신·출산으로 인한 학업 중단을 질병으로 인한 학업 중단과 구별하지 않고 출석을 인정하거나 휴학을 가능토록 함으로써 청소년 비혼모에 대한 낙인과 차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조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모범으로 하고 있으며, 경기도학생인권조례와 서울시교육청 자문위안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집회의 자유 조항 명시되어야

- 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의 일환으로서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이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점심시간, 방과후 시간 등을 이용하여 ‘학생인권 보장, 재단비리 해소’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는 이유로 체벌이나 부당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다수 학교가 학생의 ‘집단행동’을 엄벌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난 2008년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반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학생들이 체벌을 당하거나 학생회장 출마를 저지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에 집회의 자유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은 이 같은 부당 징계나 처벌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지, 집회 개최나 참여를 부추기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 학생들이 학내에서 집회를 열게 되는 이유는 학교 안 의견 수렴 절차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입니다.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면 학교가 정치판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대다수 학내 집회의 사유는 학생인권 문제나 학교비리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가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운영된다면 굳이 집회를 열 필요조차 없을 것입니다. 다만 학교가 이러한 운영 원칙을 저버렸을 경우에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 최소한의 방어 수단으로서 집회의 자유가 보장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면 학교가 이수라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이것은 현실적 근거가 없는 비판입니다. 집회의 목적이나 양태, 규모 등은 매우 다양할 수 있습니다. 운동장이나 강당에서 열리는 학생조회도 집회의 일종입니다. **선진 외국에서도 학내 집회를 교육 경험의 일환으로 받아들여 학생들의 자유로운 개최, 기획, 참여를 허용하고 있으며, ‘허가’와 ‘불허’의 문제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학생들은 침묵이나 피켓팅, 종이비행기 날리기 등으로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는 평화로운 집회를 열어 왔습니다.

- 지난 10월 6일 발표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에서도 학생들이 학교 안팎에서 정치적 활동을 포함하여 결사와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법률, 교육부의 지침, 교칙을 수정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CRC/C/KOR/CO/3-4, 40~41항). 지난 2008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도 울산의 한 중학교에서 일어난 교내 집회를 학교측이 강제해산하고 체벌 등을 가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 집회의 자유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 자문위안에서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집회의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 다른 학교구성원의 안전이나 학습권과 충돌할 경우를 대비하여 최소한의 제한 조항을 삽입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4. 종교 자유 조항은 이미 확립된 원칙을 구체화한 것일 뿐

■ 문화체육관광부가 펴낸 <2008년 한국의 종교현황>에 따르면, 서울 유·초·중·특수학교 가운데 **종립학교는 무려 256개**에 이릅니다. 이 중 **기독교 설립 학교는 150개로 60%**에 이릅니다. 그런데 최근 기독교단체들이 학생인권조례의 종교 자유 조항에 대해 ‘종교교육을 목적으로 한 미션스쿨의 근본 목표를 훼손하고 있다’며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 **종립학교라 할지라도 학생에게 종교 의식이나 교육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은 이미 교육당국이 일관되게 유지해온 원칙**입니다. 특히 2004년 서울 대광고 강의석 학생의 단식농성으로 ‘강요 금지’의 원칙은 재확립된 바 있습니다. 이미 많은 종립학교들도 이 원칙에 따라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종립학교들이 관리·감독의 공백을 틈타 종교의식 참여를 거부하거나 대체 과목을 편성하지 않는 등의 편법을 사용해 왔고, 학생의 신앙을 이유로 학생회 활동 등 교육 기회를 제한하는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해 왔습니다. 최근에도 한 학교가 신입생과 학부모에게 기독교 교육 프로그램 의무 참여를 요구하는 서약서 작성을 강요해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2011.2.11 BBS 기사 참조). **학생인권조례의 종교 자유 조항은 이러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관련 기준을 재확인하고 구체화하고 있을 따름이지, 새로운 기준을 종립학교에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 지난 10월 6일 발표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최종견해에서도 종립학교들이 학생의 종교 자유를 실제로 제한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음을 크게 우려하면서 현재의 조치로는 **종교의 다양성에 우호적인 환경을 촉진하는 데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CRC/C/KOR/CO/3-4, 38~39항).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에서 시작되어 전국적 흐름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전북에서도 11월 조례안이 의회에 상정되었고, 경남에서도 11월말 주민발의가 성사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와 서울교육의 혁신을 바라는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시의회가 서울시민의 열망과 인권의 원칙에 부합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서둘러 제정해 줄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자료 4]

[기자회견문]

서울학생인권조례는 민주의 미래다!

-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을 훼손하지 말라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이 서울시의회 교육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심의되는 오늘, 우리는 참담한 심정과 간절한 희망으로 이 자리에 섰다.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에 대하여 어떠한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 오늘로 조례 심의를 연기하였다. 주민발의 서명에 참여했던 서울시민 10만과 교육계 안팎의 지지, 나아가 130만 서울학생의 열망이 담긴 주민발의안은 오늘도 의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처참히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은 인권과 민주주의에 기반한 학교를 만들고자 하는 시민들의 열망을 밑받침 삼아, 지난해 겨울에서 봄, 다시 봄에서 여름으로 이어진 서명운동의 땀과 눈물로 지어낸 결실이다. 학생인권이란 주변적 의제로는 주민발의에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많은 이들의 예상을 깨고 대한민국의 중심에서 성사된 시민입법의 결실이다. 갖가지 위헌적 의무와 권위주의의 족쇄에 묶여 질식돼 온 학생의 존엄을 되살리기 위한, 다양성과 평등, 자유의 공기 속에 배움의 기쁨을 느끼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민주시민의 선택이다. 민주주의의 참뜻을 몸소 익힐 수 있는 교육이 아니고서야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미래도 없다는 지혜의 소산이다. 그럼에도 서울시의회가 해괴망측한 논리를 앞세운 수구세력의 외압에 휘둘려 민주시민의 뜻을 무참히 훼손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퐁퐁 언 대지를 녹이고도 남을 만큼 서울시의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뜨겁고도 매섭다. 우리는 오늘 교육상임위와 본회의의 심의 과정과 결정을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수구세력이 억지스레 만들어낸 논리를 앵무새처럼 읊어대고 학생의 존엄과 소수자의 인권을 무참히 공격해대는 이들의 이름을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우리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무산되거나 주민발의안이 부당한 가위질로 훼손될 경우, 그 누구보다 서울시의회 다수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에 그 책임을 물을 것임을 선포한다.

- 서울학생인권조례는 민주의 미래다.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를 반드시 제정하라!

- 민주시민의 뜻이다. 주민발의안의 후퇴와 훼손에 반대한다!

- 경기도 조례와 광주 조례는 마지노선이다. 서울시의회는 경기도, 광주보다 더 진전된 조례를 반드시 제정하라!

- 경기도도, 광주도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 명시했다. 차별 금지 조항을 원안대로 제정하라!

2011년 12월 19일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인권단체연석회의/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건강세상네트워크,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교육공동체 나다, 국제앰네스티대학생네트워크, 군인권센터, 대안교육연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대한성공회정의평화사제단,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서울시당,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원회, 서초강남교육혁신연대, 어린이책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법률공동체 두런두런, 인권운동사랑방, 전교조서울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지역본부,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서울특별시지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즐거운교육상상, 진보교육연구소, 진보신당서울시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서울지부, 청소년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서울지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 한국케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홍사단교육운동본부,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